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5급 1명)은 증원하며, 기획재정부에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국유재산특례 제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조달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 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를 “국유재산조정과 · 출자관리과 및 공공조달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공공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 총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 해석 및 협의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 · 해석 및 협의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 · 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전략계획의 수립
8.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9.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 · 교육
10.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 · 연구
11.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 · 제도의 기획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정 · 개정 협의

1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

15.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제4항 중 “민간투자정책과 및 회계결산과”를 “민간투자정책과  
· 회계결산과 및 재정지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부터 제13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재정지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생·경제 등 주요 재정사업(군)의 집행실적 관리

4.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 관리

5.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 마련

6.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7.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영

8. 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 간 재정운용 정보 생  
산·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

9.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1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제18조제3항제19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개발사업과”를 “개발사업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기관 및 민간”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행 및 총괄·조정
7.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분석

제1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사업과장”을 “개발사업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9.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제5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3”을 “1,087”로, 일반직 계 “1,073”을 “1,077”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1”을 “33”으로, 서기관 “71”을 “7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9”를 “1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3”을 “98”로, 행정사무관 “395”를 “391”로, 행정주사 “127”을 “1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83”을 “1,087”로, 일반직 계 “1,073”을 “1,077”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1”을 “33”으로, 서기관 “71”을 “7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9”를 “1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8”을 “103”으로, 행정사무관 “409”를 “405”로, 행정주사 “107”을 “108”로 한다.

별표 4 2)를 삭제하고, 3) 중 “개발사업과”를 “개발사업협력과”로 하며,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9)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 | 2명<br>(4급 1명, 5급 1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별표 4의2 제목 중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을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2025년 4월 30일”을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6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2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국고국) ① ~ ③ (생    략)                                                                                              | 제14조(국고국) ① ~ ③ (현행과<br>같음)                                                                                                                                                                                                                                                                                                                                                                    |
| ④ 국고국에 국고과 · 국유재산<br>정책과 · 계약정책과 · 국채과 ·<br><u>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u><br>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br>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br>로 보한다. | ④ -----<br>-----<br><u>국유재산조정과 · 출자관리과</u><br><u>및 공공조달정책과</u> -----<br>-----<br>-----.                                                                                                                                                                                                                                                                                                        |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⑪ <u>공공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u><br><u>항을 분장한다.</u><br>1. <u>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 총괄</u><br>2. <u>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u><br><u>안 · 해석 및 협의</u><br>3. <u>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u><br><u>안 · 해석 및 협의</u><br>4. <u>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u><br><u>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u><br>5. <u>혁신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u><br><u>출 지원에 관한 사항</u><br>6. <u>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u><br><u>행 · 관리에 관한 사항</u><br>7. <u>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u><br><u>및 공공조달전략계획의 수립</u> |

|                                                                                                |                                                                                                                                                                                                                                                                                  |
|------------------------------------------------------------------------------------------------|----------------------------------------------------------------------------------------------------------------------------------------------------------------------------------------------------------------------------------------------------------------------------------|
|                                                                                                | <u>8.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u><br><u>9.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교육</u><br><u>10.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u><br><u>11.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u><br><u>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정·개정 협의</u><br><u>1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u><br><u>1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u><br><u>15.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u> |
|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 ③<br>(생략)                                                                    |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 ③<br>(현행과 같음)                                                                                                                                                                                                                                                  |
| ④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재정성과평가과·타당성심사과· <u>민간투자정책과 및 회계결산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br>-----<br>----- <u>민간투자정책과·회계결산과 및 재정지출관리과</u> -----<br>-----<br>-----.                                                                                                                                                                                                |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                                                                               | ⑤ -----                                                                                                                                                                                                                                                                          |

항을 분장한다.

1. ~ 6의16. (생략)

7.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8.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  
립·조정

9.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10.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에 관한 사항

11.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  
영

12.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  
센티브 제도의 운영

13.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  
선 지원

14. ~ 18. 삭제

19. ~ 28. (생략)

⑥ ~ ⑨ (생략)

⑩ 삭제

<신설>

-----.

1. ~ 6의1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9. ~ 28.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⑪ 재정지출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

제18조(대외경제국) ①·② (생략)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19.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분석

립·조정

3. 민생·경제 등 주요 재정사업(군)의 집행실적 관리

4.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 관리

5.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 마련

6.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7.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영

8. 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 간 재정운용 정보 생산·공유 및 협력 기반 구축

9.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1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제18조(대외경제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8. (현행과 같음)

<삭 제>

|                                                                                                   |                                                             |
|---------------------------------------------------------------------------------------------------|-------------------------------------------------------------|
| 20. · 21. (생략)                                                                                    | 20. · 21. (현행과 같음)                                          |
| ④ ~ ⑨ (생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생략)                                                                              |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 · 국제기구과 · 개발전략과 · <u>개발사업과</u>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br>-----<br><u>개발사업협력과</u> -----<br>-----<br>-----. |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br>-----.                                           |
| <u>&lt;신설&gt;</u>                                                                                 | 1. <u>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이행 및 총괄 · 조정</u>                |
| 1. ~ 3. (생략)                                                                                      |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 4.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부처, <u>기관 및 민간</u> 과의 협력                                                     | 5. -----<br>-- <u>기관</u> ---                                |
| 5. (생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u>&lt;신설&gt;</u>                                                                                 | 7. <u>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 · 분석</u>                     |
| 6. (생략)                                                                                           | 8. (현행 제6호와 같음)                                             |
| ⑥ <u>개발사업과장</u> 은 다음 사항을                                                                          | ⑥ <u>개발사업협력과장</u> -----                                     |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⑦ (생략)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① 공공조달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0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

1. ~ 7. (현행과 같음)

8.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9.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제5장 한시조직

<삭제>

<삭제>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6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2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2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과학기술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삭 제>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 급 | 별 | 현            | 행 | 개정안          | 증  | 감 |
|---|---|---|--------------|---|--------------|----|---|
| 총 | 계 | • | •            | • | •            | •  | • |
|   |   |   | <u>1,083</u> |   | <u>1,087</u> | +4 |   |
| 일 | 반 | 직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u>1,073</u> |   | <u>1,077</u> | +4 |   |
| 부 | 이 | 사 | •            | • | •            | •  | • |
| 관 | 또 | 는 | •            | • | •            | •  | • |
| 서 | 기 | 관 | <u>31</u>    |   | <u>33</u>    | +2 |   |
| 서 | 기 | 관 | <u>71</u>    |   | <u>70</u>    | -1 |   |
| 서 | 기 | 관 | <u>9</u>     |   | <u>10</u>    | +1 |   |
| 또 | 는 | 과 | <u>93</u>    |   | <u>98</u>    | +5 |   |
| 학 | 기 | 술 |              |   |              |    |   |
| 서 | 기 | 관 |              |   |              |    |   |
| 또 | 는 | 행 |              |   |              |    |   |
| 정 | 사 | 무 |              |   |              |    |   |
| 관 |   | • | •            | • | •            | •  | • |
| 행 | 정 | 사 | <u>395</u>   |   | <u>391</u>   | -4 |   |
| 무 | 관 | • | •            | • | •            | •  | • |
| 관 |   |   | <u>127</u>   |   | <u>128</u>   | +1 |   |
| 행 | 정 | 주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br><u>1,083</u> | •<br><u>1,087</u> | +4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1,073</u>      | <u>1,077</u>      | +4  |
| •              | •                 | •                 |     |
| •              |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u>31</u>         | <u>33</u>         | +2  |
| 서기관            | <u>71</u>         | <u>70</u>         | -1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9</u>          | <u>10</u>         | +1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98</u>         | <u>103</u>        | +5  |
| •              | •                 | •                 |     |
| 행정사무관          | <u>409</u>        | <u>405</u>        | -4  |
| •              | •                 | •                 |     |
| 행정주사           | <u>107</u>        | <u>108</u>        | +1  |
| •              | •                 | •                 |     |
| •              | •                 | •                 |     |